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1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3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임차개시일 요건 폐지 등	21
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31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1항) ○ 세액공제 대상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u><신 설></u>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공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송언석의원안)</u>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10% (윤준병의원안은 ②의 경우 50%) ○ 적용기한: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2035. 12. 31.</u>(박수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송언석의원안) 2025. 1. 1.(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인선의원안, 이만희의원안)

현행	개정안
☐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요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공제율: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 ○ 적용기한: <u>2025. 12. 31.</u>	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송언석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요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 공제율: 투자금액의 1%(대), 3%(중견), 7%(중소)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제8조의3제4항) ○ 요건: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중고자산 무상 기증 ○ 공제율: 해당자산 시가의 10% ○ 적용기한: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이인선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84),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60), 송언석의원안 2025. 2. 20. 발의(의안번호 8311), 이만희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27), 박수현의원안 2025. 5. 12. 발의(의안번호 10481), 김상훈의원안 2025. 7. 9. 발의(의안번호 11359),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7), 허성무의원안 2025. 8. 25. 발의(의안번호 12329), 서영교의원안 2025. 9. 11. 발의(의안번호 1291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각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서영교의원안), 2028년 말까지 3년(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정부안), 2030년 말까지 5년(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또는 2035년 말까지 10년(박수현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상훈의원안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그 외에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 및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조의3제1항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공제율: 해당 출연금의 7% - 적용기한: 2013. 12. 31.

시행연도	내 용
2014년	- 적용기한 연장: 2016. 12. 31.
2017년	- 공제율 상향: 해당 출연금의 10% - 적용기한 연장: 2019. 12. 3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2020년	- 공제대상 신설: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적용기한 연장: 2022. 12. 31.
2022년	- 공제대상 신설: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2025. 12. 31.

동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
요사업은 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¹⁾,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²⁾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³⁾ 및 농어촌상생
협력기금사업⁴⁾, ③ 상생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사
내근로복지기금⁵⁾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⁶⁾, ④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사업⁷⁾이 있음.

□ 현행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

1)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보증기관은 이를 기초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2)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협력중소기업과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출연금을 내고, 협력재단은 해당 기
업의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5)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를 무상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차례 적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져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 현행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동 세액공제는 1981년 말 세법개정으로 1982년부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써,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교육기관 기증 세액공제는 산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개정연혁]

유형	내용	공제율
상생협력기금 출연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 -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10%
유형고정자산 무상 임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	3%
수탁기업 시설 투자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연구시험용자산 무상 기증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자산 등의 자산을 대학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10%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⁸⁾는 2024년 실적치 기준 약 294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	0	0.8	0.5	0.5	0.2	0.7	0.7
법인세	179	202	212	329	408	294	279	285
합계	179	202	213	329	409	294	280	286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공제,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 공제,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임.

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송언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먼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협력중소기업 및 수탁기업의 자산 및 시설 확충을 도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향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영업이익률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3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지표]

(단위: %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률 차이	1.5	1.3	2.0	2.6	3.6	3.7	1.4	1.3	3.5	1.7	0.5
임금격차	53.8	53.2	54.5	54.9	56.2	53.1	55.5	57.8	54.7	53.6	53.7
연구개발비 비중	18.2	17.6	18.5	19.0	17.4	18.0	18.7	19.4	19.8	19.3	17.2

주 1) 영업이익률 차이(%p) = 대기업 영업이익률-중소기업 영업이익률

2) 임금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 연구개발비 비중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e-나라지표

[민간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연구개발비	625,634	688,344	715,067	735,998	808,076	894,213	942,968
대기업	398,038	438,236	446,658	451,694	491,394	551,706	606,503
(대기업증감률,%)	20.4	10.1	1.9	1.1	8.8	12.3	9.9
중견기업	90,687	95,954	101,864	103,691	114,751	125,041	130,899
(중견기업증감률,%)	13.0	5.8	6.2	1.8	10.7	9.0	4.7
중소기업	70,069	74,883	80,048	79,341	85,251	94,227	79,525
(중소기업증감률,%)	6.7	6.9	6.9	-0.9	7.4	10.5	-15.6
벤처기업	66,840	79,272	86,497	101,272	116,681	123,239	126,042
(벤처기업증감률,%)	6.1	18.6	9.1	17.1	15.2	5.6	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개정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출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협력이 고용증대 효과, 산업 생태계 안정화 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 수준의 상생협력 도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하고, 본 조세특례의 세액공제를 인상 조치가 기업의 출연 여부, 출연금 규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지

원이 협력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임금 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영여건의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 지출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내국세 수입이 법인세 감면액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⁹⁾.

셋째, 연구시험용 시설의 무상기증을 유도하여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외에 ‘기부금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¹⁰⁾)’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

9)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482억원인 반면, 조세제정연구원이 추정한 추가 내국세 징수액은 약 665억원임.

10)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 제100조의32¹¹⁾)’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중복지원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출연금액의 104.5%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세액감소 효과 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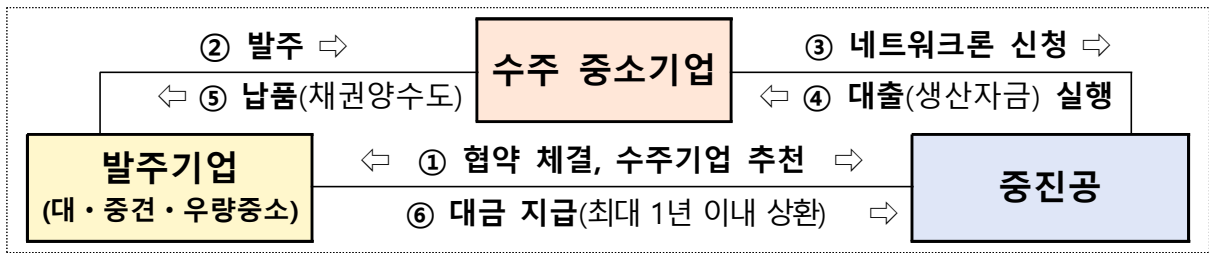
항목	적용내용	세액감소율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10%
기부금 손금산입 효과 (「법인세법」 제24조)	출연금액 전액 손금 산입 (기준 소득금액의 10% 한도)	최대 25%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효과 (「조특법」 제100조의32)	출연금액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약 60% (300% * 20%)
합계		총 104.5% 95%(법인세)+ 9.5%(지방소득세)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주기업인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발주기업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협력하여 발주금액의 80%까지 365일 이내 단기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계형 정책금융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95억원 증가한 1,395억원에 달함.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 확대된 155.9억원임.

또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용은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1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위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나. 세액공제 대상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추가(송언석의원안)

- 협력중소기업¹²⁾이란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기업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과 수탁기업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하는 상생협력의 취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평균소득은 298만원에 불과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약 2배에 달함.

단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을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비용 격차를 고려할 때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 1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비용인 43만 4천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에 불과함.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전 규모	249.4	249.6	272.2
300인 미만 (A)	155.0	136.9	151.3
10~29인	130.1	119.4	127.0
30~99인	158.4	137.6	151.4
100~299인	179.7	158.7	183.5
300인 이상 (B)	363.7	400.9	434.2
300~499인	193.6	228.9	241.7
500~999인	219.2	206.3	242.9
1,000인 이상	442.5	489.3	526.1
A/B*100	42.6	34.1	34.8

주: 법정외 복지비용: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 건강보건, 식사, 자녀학비보조 등의 비용
 자료: 연도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조의3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중소기업¹³⁾이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전자금 대부,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각각 도입하여 대기업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최대 50%(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100%(공동근로복지기금)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830개 근로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하여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둘째, 근거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기금과 달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목적의 출연금은 협력기업에 대한 대가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임차개시일 요건 폐지 등

현 행	개정안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6조의3) ○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시행령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금융업, 사행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임대상가 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 ○ 공제내용 -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u>70%</u>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u>50%</u>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 <u>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u> ※'24년 세법개정 -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공제율 인상 및 공제기간 요건 폐지·연장 ○ 대상 -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소상공인인</u>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정일영의원안) ○ 공제내용(정일영의원안): -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u>80%</u>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u>60%</u>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 <u>기간 조건 삭제</u> (정일영의원안) - <u>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u>(서영교의원안) - <u>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정일영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394), 추경호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63), 서영교의원안 2025. 9. 11. 발의(의안번호 1291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요건 중 임차개시일 및 일몰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공제

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료 인하 기간(공제기간,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한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려는 것이며,

서영교의원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동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도 불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¹⁴⁾인 임차인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당초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¹⁵⁾되었으며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개정을 통해 여섯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 2021년 3월 개정 시에는 기준소득금액¹⁶⁾ 1억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및 개정안과의 비교]

개정 시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서영교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정일영 의원안
	3월	12월	3월	12월	12월	12월	12월			
공제율	인하액의 50%		인하액의 70%							8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50%							60%
공제 기한	2020. 6.까지	2021. 6.까지	2021. 12까지	2022. 12까지	2023. 12까지	2024. 12.까지	2025.12 까지	2027.12. 까지	2028.12. 까지	공제기한 삭제

2024년에는 소득세에서 417억원, 법인세에서 96억원이 감면되어 총 513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연도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전체	1,672	1,970	1,006	513	380	393
소득세	1,448	1,597	801	417	303	315
법인세	225	373	205	96	77	78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5) 2020년 3월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으로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16) 기준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항)

□ 먼저, 정일영의원안의 경우 공제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있어 공제기간의 제한이 없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공제기간 이전부터 임대료를 인하여 온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코로나 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에 대해서 세제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건을 이바지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공제기간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다만, 동 조세특례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율(70%)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해제된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정일영의원안에 따라 공제율을 10%p 상향할 경우 ①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의 경우 공제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되며, ②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승함.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까지 감안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함에 따

라 손해를 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공제율별 세후소득 변화]

공제율 수준	50%	70% (현행)	80% (정일영의원안)
임대료 인하액	△100	△100	△100
세액공제	+50	+70	+80
소득세 감소액 (한계세율 24% 가정)	+24	+24	+24
세후소득 변화	△26 인하액의 74% 보전	△6 인하액의 94% 보전	+4 인하액의 104% 보전 → 소득역전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10~30% 수준인 데 비해 동 제도의 세액공제율(50~70%)은 높은 수준이므로 이보다 공제율을 더 상향할 경우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음.¹⁷⁾

□ 다음, 정일영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및 정부안과 같이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연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7)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수준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물가상승, 높은 금리,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부진¹⁸⁾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사업자 폐업사유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사업부진	행정처분 등 ¹⁾	기타 ²⁾	계
2019년	41.4	5.8	52.8	100.0
2020년	43.1	6.3	50.6	100.0
2021년	45.6	7.1	47.3	100.0
2022년	46.8	6.3	47.3	100.0
2023년	48.9	5.4	45.7	100.0

주 1: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을 포함

2: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폐업사유를 알수 없는 경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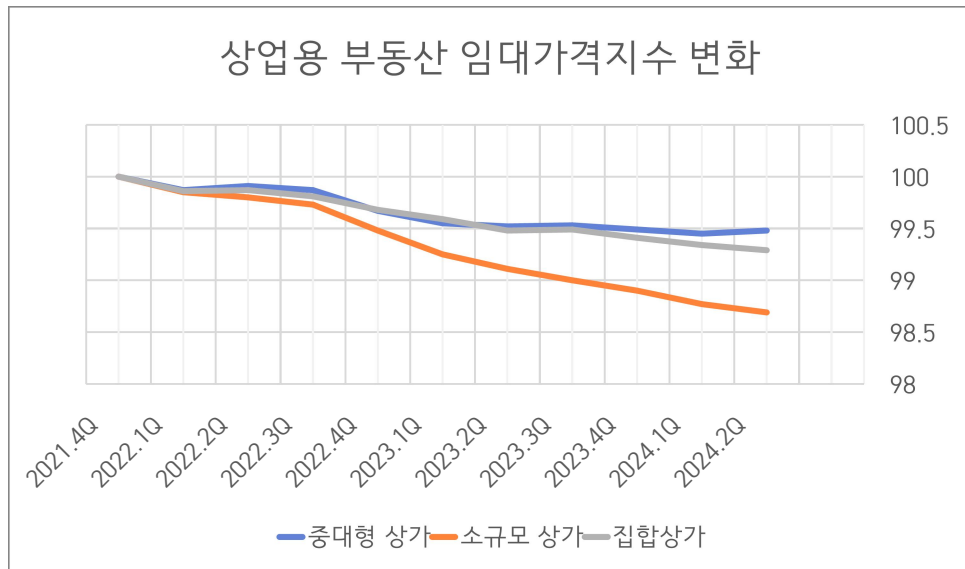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둘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집합 상가¹⁹⁾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5년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가격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지역일수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수혜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18) 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를 의미

19) · 중대형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 집합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축물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화]



주 : 2021년 4분기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
 자료 : 부동산 통계정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및 2025년에 실시된 2차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²⁰⁾에
 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먼저 ② 2022년 심
 층평가에서는 는 방역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본
 제도의 도입·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²¹⁾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
 적 수단으로 동 제도의 제한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 및 점진적 폐지 추진을 제안함. 또한 ②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임대인들의 세 부담 완화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2. 9.

21) 개인사업자의 제도 활용도(전체 정책대상자 중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는 기준에 따라 4.2~8.3% 수준이며, 법인사업자는 6.9~7.3% 수준으로 나타남.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²²⁾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²³⁾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²⁴⁾, 불요불급한 조세 지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 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 (A)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 (B)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14.3	14.6	14.3	14.6	15.5	16.5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당해 제도의 궁극적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국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

22)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3) 0.7%p

24) 2023년 결산 기준 56조 4,000억원, 2024년 추정치 29조 6,000억원

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해당 재원을 활용한 예산사업 편성 등 재정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일영의원안은 공제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일영의원안에 의할 경우 경우, 3년간 2,989억원(연 평균 59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정일영의원안	△598	△598	△598	△598	△598	△2,989	△598

□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179억원(연평균 393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393	△393	△393	△1,179	△393

문 의 처

02)6788-5149

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 ○ 적용기한(제1항) - 재활용폐자원: <u>2025. 12. 31.</u> - 중고자동차: <u>2025. 12. 31.</u> ○ 공제한도(제2항) -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u><신 설></u>	□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한도 신설 ○ 적용기한 연장 - 재활용폐자원 · <u>2027. 12. 31.(김영진·서영교의원안)</u> · <u>2028. 12. 31.(이인선·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30. 12. 31.(신영대의원안)</u> - 중고자동차 · <u>2027. 12. 31.(김영진·서영교의원안)</u> · <u>2028. 12. 31.(이인선·추경호·안도걸의원안, 정부안)</u> · <u>2030. 12. 31.(신영대의원안)</u> ○ 공제한도 신설 - (현행과 같음) - <u>중고자동차: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정부안)</u>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부 칙 ○ 시행일(적용기한 연장(제1항)) - 2026년 1월 1일(김영진·추경호·서영교·안도걸의원안, 정부안) - 공포 후 6개월(이인선·신영대의원안) ○ 시행일(공제한도 신설(제2항)) - 2026년 7월 1일(정부안) ○ 적용례: 공제한도 신설(제2항)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정부안)

* 김영진의원안 2025. 2. 26. 발의(의안번호 8426), 이인선의원안 2025. 5. 19. 발의(의안번호 8426)

호 10541), 신영대의원안 2025. 6. 30. 발의(의안번호 11175), 추경호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83), 서영교의원안 2025. 9. 11. 발의(의안번호 12913), 안도걸의원안 2025. 10. 2. 발의(의안번호 1345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재활용폐자원의 적용기한에 대해서 김영진·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인선·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영대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의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김영진·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인선·추경호·안도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영대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먼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

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²⁵⁾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110분의 10의 공제율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지속적인 공제율 축소로 2025년 현재 103분의 3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11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다가 2017년 7월부터 중고자동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부터 110분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있음.

[매입세액 공제율 변천과정]

구분	1994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
재활용폐자원	10/110	8/108	6/106	6/106	5/105	3/103	3/103
중고자동차	10/110	10/110	10/110	9/109	9/109	9/109	10/110

□ 한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는 재화로서의 성격이 상이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차이가 있음.

먼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중고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 여전히 자동차 고유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연한이 오래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서, 중고자동차 가격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²⁶⁾

26) 예를 들어 개인이 새 자동차를 처음에 3,300만원(공급가격 3,000만원 + 부가가치세 300만원)에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를 원가격의 1/3인 1,100만원에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1,100만원에는 부가세 100만원(처음에 납부한 300만원의 1/3)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또한,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수리·정비하여 다시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정비 등에 따른 부가가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고차매매업자는 1,300만원(취득가격 1,100만원 + 부가가치 200

그러나, 재활용폐자원은 중고자동차와 달리 재화로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활용폐자원의 가격에는 본래 재화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²⁷⁾, 재화를 처음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분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격의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이유는 조세지원을 통해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을 장려²⁸⁾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 때문이며, 재활용업체에 폐자원을 판매하는 자가 소위 ‘폐지수거 노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제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음.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감면액	9,453	9,891	11,760	14,409	13,853	15,370	17,680	18,23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이러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2024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1조 5,370억원으로, 동 특례와

만원)의 10%인 13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중고차 구매자는 1,430만원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됨. 자동차의 총 부가가치는 3,200만원이므로 그 10%인 320만원이 부가세로 납부되었어야 하는데 이 경우 430만원이 납부되어 110만원의 중복과세가 발생하였으며, 그 부담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된 것임.

27) 예를 들면 신문의 경우 신문의 원래 가격에는 정보재로서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만 폐지로 수집될 때의 가격에는 단순히 종이의 무게만 반영됨.

28) 재활용업체에 폐자원을 판매하는 폐지수거 노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음.

관련한 조세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6년에는 1조 8,23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연장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영세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폐지수거 노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폐지수거 노인 등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연장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둘째, 동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²⁹⁾에서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폐자원시장의 성숙, 영세사업자 지원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재활용량의 증가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제도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25 9.

즉,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당분간은 가격기구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실패³⁰⁾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통한 지원은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폐자원의 재활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는 정책으로서 유의미한 정책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재활용 시장의 진입·퇴출이 가능해지는 장기에는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매입비용 감소가 잠재적 신규시장 진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신규시장 진입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폐자원의 재활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재활용폐자원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세액 공제율을 낮게 유지하되,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³¹⁾가 영수증, 계산서 등 세금계산서보다 공신력이 낮은 것으로 유지되는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더 많이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하거나 매입액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30)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의 재활용률이 저조한 근본원인을 시장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즉, 소비 또는 설비단계에서 소비·소모 과정을 거친 폐자원·폐기물의 경우 소비재·설비재 등의 관점에서는 잔존가치가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재활용을 통해 시장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환경 미흡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 극대화 수준에 미달하는 시장실패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한도 신설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판매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먼저,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는 중고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원 소유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신이 처음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지불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을 산정함.

그러므로, 중고자동차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바, 그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임.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은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

특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세금 부담 경감의 혜택을 제공하여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제도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와 동일하게 10/110³²⁾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³³⁾

현행 제도상 중고차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더라도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소 신고할 유인이 존재함.

특히 중고자동차를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매출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조차 취득

3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공급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로부터 총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받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110원을 지불하면 이 중 10원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원이 공급가액이므로 이때 부가가치세는 총액에서 10/110의 비율로 계산됨.

3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 김영우, 김서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2.29.

세 절감 효과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인이 되어 탈세에 공모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고자동차 취득시 적용되는 7%인 취득세 절감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포기하고 탈세에 공모하게 될 수 있음.³⁴⁾

따라서,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 시 중고차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누락과 거래금액 축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당공제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여 탈세 유인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

34) 이는 현행 중고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중고차 거래가격이 과표(시가표준액)를 초과하기만 하면,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차량 이전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게 거래금액을 신고하더라도, 과표 이상이면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임. 실제 '25년 심층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19%가 판매자의 가격할인 등 제시로 인해 스스로 발급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변하였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법 제108조제2항³⁵⁾은 재활용폐자원에 한해 매출액의 80%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개인의 무자료 거래 내역으로 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합법적이고 확인 가능한 매입 거래액은 이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별도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³⁶⁾³⁷⁾

반면, 중고자동차 거래의 경우, 자동차등록세의 시행과 중고자동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유통 구조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다른 중고품이나 재활용 자원에 비해 부당 환급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그간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지 않았음.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출가격을 낮춰 신고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36)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산정방식은 기존에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과세기간별 매출액의 80%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2007년에 변경되었음.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 전체 평균 신고 매입율이 약 90%인데 비해,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약 79.5%로 나타난 점을 반영한 조치였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제한하고자 각 사업장별 매출 과표의 80%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37)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서도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50%이고,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70~75%, 이 밖의 개인사업자는 60~65%로 사업자별로 상이함.

하는 사례 등 부당·과다 공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고려하되, 동시에 허위 기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매출액 전체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실질적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³⁸⁾

이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전체의 일정률(10/11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만 같은 요율을 적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매출-매입)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뤄져 과도한 환급을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제한도로 인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를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됨.

특히,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에 비해 취득 후 판매까지 장기간

38)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적정 매입률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재활용폐자원과 같이 80%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고, 중고자동차는 재화 1개당 가격이 높아 일시적인 판매지연으로 인한 공제한도 축소시 이에 따른 매입세액 축소폭이 재활용폐자원에 비해 큰 점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특성과 재화의 판매기간 등을 반영하여 중고자동차에 한해 이월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1조 6,71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조 6,268억원(연평균 1조 9,2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12,484	-13,346	-14,292	-15,328	-16,463	-71,912	-14,382
지방소비세 (25.3%)	-4,228	-4,520	-4,840	-5,192	-5,576	-24,356	-4,871
합계	-16,712	-17,866	-19,132	-20,520	-22,039	-96,268	-19,2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참 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 108, § 108의2)

- **(개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일정액을 공제(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 * 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적용대상 품목)** 폐자원 11종* 및 중고자동차**
 -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 제작일로부터 1년 내 수출되는 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매각하는 자동차는 제외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 * 재활용폐자원: ('93~'01) 10/110 → ('02~'06) 8/108 → ('07~'13) 6/106 → ('14~'15) 5/103 → ('16~) 3/103
 - 중고자동차: ('93~'10) 10/110 → ('11~'17) 9/109 → ('18~) 10/110
-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에 의한 매입가액
 - * '07년 말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출액의 90% 적용
- **(제출서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또는 영수증)** 을 첨부하여 예정·확정신고시 제출
 - * 공급자의 등록번호·명칭·대표자 성명(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기재
 - ** 「소득세법」 §163, 「법인세법」 §121
- **(스크랩등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외에 예정신고시에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환급 가능(조특법§108의2)